

## ■ 정책 동향 ■

##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방안

심희정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15일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및 전가금융업자 등 5개 업권 176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총 480개의 약관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156개사 170개 약관에서 불합리한 항목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대상이 되었던 약관조항 유형으로는 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가령 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소비자가 접근 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통지시점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부과하는 조항, 금융회사의 본점·영업점 소재지 법원만을 합의관할로 명시하는 조항 등), ② 금융회사의 면책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경우(가령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현행 법령이 정하는 면책사유 이외의 사유를 명시하는 조항 등), ③ 약관이 현행 법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령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조항이 폐지되었는데도 공인인증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등)가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해당 약관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현행 법령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핀테크 활성화와 더불어 전자금융업 등록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규모 및 사업형태가 다양하고 약관 제·개정 시 참고할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등 전자금융 이용에 따른 편의성을 제공하고 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

는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금융업자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을 2017년 1/4분기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 보도자료